

# 일반대학원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내규

개정 2024.11.22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의 학사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내규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에 적용된다.

## 제2장 학위과정

### 제3조 (학위과정)

- 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에서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.
- 석·박사 통합과정(이하 "통합과정"이라 한다)은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.

## 제3장 입학전형

### 제4조 (전형구분)

비즈니스인텔리전스학과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.

### 제5조 (지원자격)

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석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(예정자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박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(예정자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석·박사 통합과정 : 동조 제1호(석사학위과정)를 적용한다.

### 제6조 (입학전형위원)

-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.
-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.

## 제7조 (입학전형방법)

### ① 일반전형

1.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병행한다
2.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.
  - 가. 대학 및 대학원 성적
  - 나. 학업 및 연구계획서(소정양식)
3.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.
  - 가. 전공에 대한 지식
  - 나.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
  - 다. 전공에 대한 적성
  - 라. 해당 학과 학업에의 지속성
  - 마.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성역량
  - 바.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

### ② 외국인전형

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  
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 지원하는 경우  
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.

### ③ 편입학전형

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한다.

## 제8조 (평가기준)

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점 100점만점으로 하며,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 
매뉴얼화 한다.

## 제2장 학위 취득 요건

### 제9조 (석사학위 취득요건)

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석사과정은 총 24학점 중 비즈니스인텔리전스·MIS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  
칙으로 하되,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과목 수강이 필요할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.
- ② 비동일계 석사과정 입학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전공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
- ③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입학 후,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며, 논문 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전  
까지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도 및 학사관리는 학과장이 담당한다.
- ④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(박사학위 취득요건)

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박사과정은 총 36학점 중 비즈니스인텔리전스·MIS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일계열의 타학과 관련 과목 수강이 필요할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.
- ② 특수대학원 졸업자 및 비동일계 출신 박사과정 입학자는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
- ③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최고 6학점까지 독자연구(Independent Study)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
- ④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박사과정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  1.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문제출 한 학기 전에 학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문 Proposal을 발표한 후 교수들의 합의 하에 논문 Proposal이 통과된 자에 한해서만 다음 학기에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.
  2. Proposal 신청 시 국내 등재지에 논문을 1편 이상(게재예정 포함)게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3장 종합시험

제11조 (시험시기)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.

### 제12조 (시험과목)

#### ① 석사과정

해당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 중 3과목을 택하여 시험 볼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생은 응시하는 학기 초에 출제 교수와 종합시험 범위에 대해서 상의하여야 한다.

#### ② 박사과정

해당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 중 4과목을 택하여(4과목 중 반드시 비즈니스인텔리전스 과목을 2과목 이상 응시) 시험 볼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생은 응시하는 학기 초에 출제 교수와 종합시험 범위에 대해서 상의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(응시자격)

각 과정 소정학점의 3분의 2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 중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14조 (응시절차)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 사무실에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.

제15조 (시험위원)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장이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 내용, 유형 등을 협의한다.

**제16조 (출제방법)**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17조 (합격인정 점수)**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

**제18조 (시험결과관리)**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 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종합시험면제)**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 칙

**제20조(준용)**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.